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109
----------	-------

발의연월일 : 2026. 9. 4.

발 의 자 : 황 희 · 문진석 · 한민수
이소영 · 이연희 · 이용선
안규백 · 김종민 · 민홍철
최혁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이하 “보이스피싱”이라 한다) 수법은 갈수록 지능화되고 빈번해지고 있어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음. 현행법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전화번호 중지제도를 두고 있으나,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경우”를 요건으로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있어 사전에 피해를 신속히 차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이에 본 개정안은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금융감독원장이 사기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전화번호에 대해서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직접 임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정식으로 중지를 요청하도록 절차를 마련하여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3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7의 제목 중 “통합신고대응센터”를 “통합대응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통합신고대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을 “통합대응단(이하 “대응단”이라 한다)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센터는”을 “대응단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센터”를 각각 “대응단”으로 한다.

제13조의3제1항 중 “검찰총장, 경찰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을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이하 이 조에서 “요청기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5항 및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3항) 중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를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중지 요청의 절차와 방법, 이의신청 절차”로 한다.

- ② 요청기관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전화번호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긴급중지(이하 “긴급차단 조치”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지체 없이 해당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긴급차단 조치는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른 긴급차단 조치를 요청한 요청기관은 요청을 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13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의7(전기통신금융사기 <u>통합</u> <u>신고대응센터</u> 의 설치 등) ①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신고 및 제보 접수 등의 업무를 효 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 찰청에 전기통신금융사기 <u>통합</u> <u>신고대응센터</u> (이하 “ <u>센터</u> ”라 한 다)를 설치한다.	제2조의7(전기통신금융사기 <u>통합</u> <u>대응단</u> 의 설치 등) ① ----- ----- ----- ----- <u>통합</u> <u>대응단</u> (이하 “ <u>대응단</u> ”이라 한 다)을-----.
② <u>센터</u> 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를 수행한다.	② <u>대응단</u> 은-----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③ 경찰청장은 <u>센터</u> 의 업무 수 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관계 행정기관과 관련 기관 · 법인 · 단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 <u>대응단</u> ----- ----- ----- ----- ----- -----.
④ 그 밖에 <u>센터</u> 의 구성 ·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④ ----- <u>대응단</u> ----- ----- -----.
제13조의3(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제13조의3(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① 검찰총장, 경찰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확인한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신 설>

등) ① 중대범죄수사청장, 경찰청장 또는 금융감독원장(이하 이 조에서 “요청기관”이라 한다)-----

-----.

② 요청기관은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전화번호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한다)에게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긴급중지(이하 “긴급차단 조치”라 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지체 없이 해당 전화번호의 전기통신역무 제공을 중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긴급차단 조치는 2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에 따른 긴급차단 조치를 요청한 요청기관은 요청을 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② <u>제1항에 따른 요청으로 전기통신역무 제공이 중지된</u> 이용자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한 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u>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u>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7. (생략) <u><신설></u> ②·③ (생략)	<u>제1항에 따른 전기통신역무 제공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u> ⑤ <u>제1항 또는 제2항</u>----- ----- ----- -----. ⑥ <u>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중지 요청의 절차와 방법, 이의신청 절차</u>-----. 제18조(과태료) ① ----- ----- ----- -----. 1. ~ 7. (현행과 같음) 8. <u>제13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전기통신역무 제공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u> ②·③ (현행과 같음)
--	---